

전자증권으로 전환 시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

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



정관 개정(주총 결의 필요)



한국예탁결제원에 업무참가 등
신청서 제출



명의개서대행회사에
전자등록 신청 의뢰



주주 대상 전자증권 전환 관련 사실
공고·통지(1개월 이상)

각 절차별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 안쪽 내용을 확인하시고,
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


실물증권 보유자 관리방안

*

전자등록된 주식의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됩니다. 전자
증권 전환 전 실물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 또는 증권사에
제출하세요.

- 발행인이 주식을 전자등록하려는 날(기준일)부터 이미 발행된
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어 해당 실물주권의 양도 또는 매매
불가
- 실물증권 보유자는 기준일 직전 영업일까지 명의개서대행
회사 또는 증권사에 보유 중인 실물주권의 제출 필요(명의
개서대행회사에 제출 시 전자등록되는 증권사 계좌를 통지)

전자증권 전환 이후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
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증권사 계좌로
옮기세요.

- 전자증권 전환 이후에도 실물증권 계속 보유자의 권리 보호를
위해 해당 주식은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
되어 관리
- 실물증권 계속 보유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
제출 및 증권사 계좌로 해당 전자등록주식의 계좌 간 대체
요청 필요
- 전자등록 이후 타인명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권리증명 서류¹
제출 또는 확인서 등² 제출(소액 실물증권³ 보유자에 한함)을
통해 특별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계좌 간 대체 가능

1. 매매계약서, 증여계약서, 상속증명서, 법원판결문 등
2. 적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혹은 주식 매매대금
이체내역
3. 2020년 8월 현재 1천만 원 이하 (향후 기준금액 변동가능)

+

www.ksd.or.kr

심의조정필(리스크-1603, 2020.07.17.)

전자등록업무부 연락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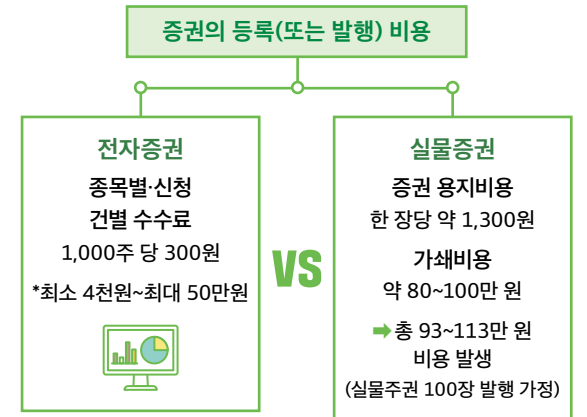
Tel. 02-3774-3147, 3148, 3153
Fax. 02-3774-3222

비상장증권 발행회사의 전자증권 전환



전자증권으로 전환 시 이런 점들이 좋아집니다.

- 실물증권 불발행으로 관련 비용이 절감됩니다.
- 증권 용지비용 및 가채비용 등 불필요



- 발행회사 부담 수수료 감면
 -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(~2024년)
 -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% 감면(~2024년)
 - 전자투표/전자위임장 관리 수수료 면제(~2022년)
- 주식사무처리의 효율성이 개선됩니다.
 - 증권발행 절차 단축 등에 따른 자금조달 신속성 제고
 - 소유자명세 분기별 발급 등에 따른 주주 현황 파악 용이
-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발판이 됩니다.
 - 전자증권제도의 선도적 도입으로 향후 성장요건 사전충족



KSD
한국예탁결제원

전자증권으로 전환(발행)하시면, 증권발행과
주주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
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

1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



2 정관 개정

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주식 등의 발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므로 해당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의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.

- * 정관 개정 필요 대상 증권 주식, 신주인수권증서, 사채, 신주인수권증권
- ** 관련 법률: 상법 제356조의2(주식의 전자등록) 제1항, 상법 제478조(채권의 발행) 제3항, 상법 제420조의4(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), 상법 제516조의7(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)

구체적으로, 해당 주식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'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'는 취지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.(주권의 종류 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삭제필요)

(예시) 상장회사 개정 표준정관

개정전
제9조(주권의 종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

개정후
제9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개정전
(신설)

개정후
제15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*

* 상기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이며, 회사 상황에 맞게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문구 변경할 것을 권유(예: 사채의 전자등록과 실물증권을 병행할 경우 '전자등록한다' 등의 문구를 '전자등록할 수 있다' 등으로 변경 가능)

3 업무참가 등 諸신청서 제출 (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)

전자등록 신청에 앞서 업무 참가를 위한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신청서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업무 참가 신청 관련 제출 필요 서류

제출서류	필요서류	제출방법
발행인관리 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인인감증명서 (원본, 발급 3개월 內) • 법인등기부등본 (원본, 발급 3개월 內) • 사업자등록증(사본) 	방문 또는 우편 접수

* 제출서류 다운로드
<http://www.ksd.or.kr> ⇒ 고객정보센터 ⇒ 양식/서식 ⇒ 업무참가

** 접수처 :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 5층 전자등록업무부 창구

4 전자등록 신청 (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의뢰)

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의 전자등록일을 지정하여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.

업무 참가 신청 관련 제출 필요 서류

개정 정관	법인인감증명서 (발급 3개월 內)	법인등기부등본 (발급 3개월 內)

* 주식은 종목별로 실물-전자증권 병용이 불가함에 따라 전환 신청 시 발행회사의 주식 전 종목 전자증권 전환

5 공고·통지 (주주명부상 권리자 대상)

전자등록을 신청한 발행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상 권리자(실질주주 포함 전체 주주 및 질권자)에게 전자증권 전환 관련 조치사항을 공고·통지하여야 합니다.



권리자 대상 공고·통지 내용 (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)

- 발행인(회사)이 주식 등을 신규 전자등록하려는 날(이하 "기준일")부터 소유 중인 실물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- 권리자 기준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(명의개서대행 회사)에게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(증권사 계좌)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발행인(회사)은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합니다.
- * 상기 내용 외 권리자에게 공고 및 통지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가능
- ** 공고는 상법상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며, 통지는 주주명부상 권리자별로 서면으로 1회 이상 실시

